

학원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·운영자에게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24일

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

- 건명: 학원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처분대상 학원

연번	학원명	설립운영자	학원주소	공시송달 사유
1	슈베르트음악학원	조용흠	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1, 2층(송현동)	등기우편 반송(수취인불명)
2	올댓보이스 실용음악학원	조선영	경북 안동시 대안로 160,3층(남문동)	등기우편 반송(수취인불명)
3	스미스어학원	권용식	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92-5, 1층(풍천면)	등기우편 반송(수취인불명)
4	다센트작업전문학원	(주)다센트 직업전문학원	경북 안동시 남문로 11 4층 401호,402호 (남문동, 현대증권)	등기우편 반송(수취인불명)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직권말소

5. 법적 근거
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(사업자등록)
-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, 제21조 제1항(처분의 사전통지)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2항(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)

6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: 2025년 1월 24일(금) ~ 2월 6일(목)

- 의견 제출처: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
- 주소: 경북 안동시 경동로 554, 안동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
- 전화번호: 054)851-9151

라. 모사전송(팩스): 054)851-9189

마. 전자우편: mail6424@gbe.kr

7. 유의사항

가.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다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
라.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(☎054-851-91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

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